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3호

「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상주시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(연구보고서 등)을 시 홈페이지 및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 및 공개에 관한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의 활용 규정(안 제5조)
- 라.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 _____

○ 연 락 처 : _____

조례안 내용	의 견 내 용	비 고